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0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R&D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·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'서울 홍콩 강소연구개발 특구'를 지정·고시하였음('20. 8. 28. 지정, '22. 10. 26. 개정)
- 나. 홍콩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지속 추진 및 특화 발전을 위하여 '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,
- 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」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기관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나. 사무명 : 홍콩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- 다. 출연근거
 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의2
 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의2

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법정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‘연구개발특구법’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을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,
- 우리 시는 과기정통부가 ’26년도 국비 20억 원 대비 지방비 100%를 편성하도록 한 ‘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통보(지역과학기술진흥과-1274호, ’25. 5. 20.)’에 따라 시비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,
-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이전·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‘기술-창업-성장’이 선순환하는 소규모,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‘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’에 대한 지원 필요

마. 주요 사업내용

- 공통수단 지원사업 : 전문기관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) 주관
 - 기술가치평가, 기술이전·사업화, 엑셀러레이팅 및 글로벌진출 지원 등
- 특화수단 지원사업 : 기술핵심기관(KIST, 경희대, 고려대) 주관
 - 특화기술 발굴·연계, 지역 특성화 육성, 강소형 기술창업 활성화

바. 출연대상 기관 개요

- 기 관 명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※ 2005. 9월 법인설립
- 설립목적 :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
- 설립근거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
- 주요기능 :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
- 소 재 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
- 조 직 : 10본부(10실, 17팀), 감사 1부 1팀 / 정원 170명

사. 추진방식

- 지방비 출연 협약체결 ※사업기간 : '26. 3. 10.~'27. 3. 9.
- 협약내용 : '26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위한 지방비 출연
- 출연목적, 출연금 사용 범위, 사업비 관리 및 사용, 실적보고, 협약변경 등

아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20억 원
- 산출근거 :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(20억원)의 100% 매칭
(단위 : 억 원)

구 분	소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
출 연 금	200	40	40	40	40	40
국비	100	20	20	20	20	20
지방비	100	20	20	20	20	20

※ 사업기간 '26. 3.~'31. 3.(5년간), 총사업비 200억 원(국비 100, 지방비 100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“특구육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○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
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1.7.20.]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실 첨단산업과 김대훈 (☎ 2133-8737)